

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-101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9. .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 중심의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

- (가칭)용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
- (가칭)아현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
- (가칭)공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근거
 -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
 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
 -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
- 필요성 :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함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: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
 라. 위탁시설 개요

구 분	위탁대상시설		
시설명 (가칭)	용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	아현동 우리동네키움센터	공덕동 우리동네키움센터
소재지	대흥로4길 13(용강동), 2층 (용강동 494-95)	백범로31길 8(공덕동), 3층 (공덕동 257-3)	만리재로 96(공덕동), 2층3층 (공덕동 108-57)
규모	113.56㎡	243,67㎡	307㎡
정원 (예정)	24명	40명	50명
위치도			

마. 민간위탁기간 : 5년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

○ (가칭) 용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

<단위:천원>

연도별	사업비용	세부내역	비고
총사업비	844,614	국비 95,875, 시비 706,739, 구비 42,000	
2020년	12,466	- 인건비 : 10,916 (센터장1, 돌봄교사 2) - 운영비 : 1,550	2020.12.개소 (1개월분)
2021년	160,623	- 인건비 : 142,023 - 운영비 : 18,600	
2022년	164,884	- 인건비 : 146,284 - 운영비 : 18,600	
2023년	169,272	- 인건비 : 150,672 - 운영비 : 18,600	
2024년	173,792	- 인건비 : 155,192 - 운영비 : 18,600	
2025년	163,577	- 인건비 : 146,527 - 운영비 : 17,050	2025.11.까지 (11개월분)

○ (가칭) 아현동 우리동네키움센터

<단위:천원>

연도별	사업비용	세부내역	비고
총사업비	850,789	국비 96,618, 시비 712,171, 구비 42,000	
2021년	133,852	- 인건비 : 118,352 (센터장1, 돌봄교사 2) - 운영비 : 15,500	2021.3.개소 (10개월분)
2022년	164,884	- 인건비 : 146,284 - 운영비 : 18,600	
2023년	169,272	- 인건비 : 150,672 - 운영비 : 18,600	
2024년	173,792	- 인건비 : 155,192 - 운영비 : 18,600	
2025년	178,448	- 인건비 : 159,848 - 운영비 : 18,600	
2026년	30,541	- 인건비 : 27,441 - 운영비 : 3,100	2026.2.까지 (2개월분)

○ (가칭) 공덕동 우리동네키움센터

<단위:천원>

연도별	사업비용	세부내역	비고
총사업비	1,909,134	시비 1,597,634 구비 311,500	
2021년	304,703	- 인건비 : 200,870 (센터장1, 부센터장1, 돌봄교사 2.5, 조리사0.5) - 운영비 : 28,000 - 급식비 : 75,833	2021.3.개소 (10개월분)
2022년	372,875	- 인건비 : 248,275 - 운영비 : 33,600 - 급식비 : 91,000	
2023년	380,324	- 인건비 : 255,724 - 운영비 : 33,600 - 급식비 : 91,000	
2024년	387,995	- 인건비 : 263,395 - 운영비 : 33,600 - 급식비 : 91,000	
2025년	395,897	- 인건비 : 271,297 - 운영비 : 33,600 - 급식비 : 91,000	
2026년	67,340	- 인건비 : 46,573 - 운영비 : 5,600 - 급식비 : 15,167	2026.2.까지 (2개월분)

아. 산출근거 : 2020년 「우리동네키움센터」 설치·운영 계획

[서울특별시 아이돌봄담당관-2035 (2020.2.10.)]

자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돌봄시설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
- 돌봄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·효율적인 관리·운영으로 돌봄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

나. 기타사항

- 추진일정
 - 민간위탁운영체 선정 방침 수립 및 공개모집 공고 : 2020.9.~10.
 - 선정심사 및 위탁운영 계약 체결 : 2020.11.~12.
 - 리모델링 설계·공사 등 환경조성 추진 : 2020.8.~2021.3.
 -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 (예정) : 2020.12.~2021.3.

<아동복지법>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

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. 15.]

<사회복지사업법>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<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>

제9조(돌봄 시설 설치·운영)

③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 시설 설치·운영 등을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2. 「민법」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
3. 「협동조합기본법」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4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